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 정 이 유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징수포상금 신청에 따른 대장비치중 “읍·면·동장”을 “포상금 지급 신청 부서의 장(읍·면·동장 포함)”으로 함.

나.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매월에서 수시로 하도록 함

다. 기타 서식 정비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읍·면·동장”을 “포상금 지급신청 부서의 장(읍·면·동장 포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읍·면·동장은 매월분”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월분 징수포상금신청서”를 “징수포상금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2조(지급범위) ----- ----- ----- , 1. ----- ----- ----- ----- 2. ----- -----
제4조(대장비치)①읍·면·동장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대장비치)①포상금 지급신청 부서의 장(읍·면·동장 포함)----- ----- ----- , ②(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②----- ----- , ③----- ----- ----- ,